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대리취업지정권을 ‘장손’ 에서 ‘모든 손자녀’ 로 확대 등 >

■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811호)

2024. 8.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 검토의견: 대리취업지정권을 ‘장손’에서 ‘모든 손자녀’로 확대 등	3
※ 참고자료	10

I.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정문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4. 6. 21.

다. 회 부 일 : 2024. 6. 2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장손에 대한 취업지원 특례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장손이 질병·장애·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의 자녀(증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취업지원을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훈령으로 독립유공자 손자녀 전원 협의 시 협의된 손자녀를 장손으로 보아 그의 자녀 1명에게 취업지원을 하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법률상 장손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훈령으로 해석 운영하고 있어 법률적 측면에서 문제 제기됨. 제도운영 측면에서는 손자녀 전원 협의가 불가하거나 소수가 반대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는 민원과 외부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법률은 취업지원에 있어 단순히 나이만을 고려하고 있어 다른 손자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됨.

실제로 독립유공자 3손의 자녀가 대리취업 지정을 받기 위해 손자녀 5명 중 4명의 동의를 받았으나 1명이 미국에 거주하며 연락 두절 상태로 협의가 불가능한 사례와 독립유공자 5손의 자녀가 대리취업 지정을 받기 위해 손자녀 9명 중 8명의 동의를 받았으나 1명이 동의하지 않아 취업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상 장손에게만 대리취업 지정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모든 손자녀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손자녀 간 협의로 지정된 손자녀, 손자녀 중 생활수준이 가장 낮은 손자녀, 손자녀 중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손자녀 1명을 선순위자로 대리취업 지정권을 부여하여 독립유공자 예우를 위한 후손의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

II. 검토의견: 대리취업지정권을 ‘장손’에서 ‘모든 손자녀’로 확대 등

- 개정안은 현재 장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대리취업지정권의 대상을 모든 손자녀로 확대하고, 대리취업지정권을 부여하는 손자녀의 우선순위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취업지원) ① (생략) ②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이 경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취업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2. (현행과 같음) 3.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라 결정된 선순위 손자녀 1명이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가. 손자녀 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정한 손자녀 나. 손자녀 중 생활수준이 가장 낮은 손자녀 다. 손자녀 중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손자녀 ③ 제2항제3호의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 선순위의 결정기준 및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illegible]

☐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직접 취업이 어려운 경우, 장손이 그의 자녀(증손자녀) 1명을 지정하여 그 자녀가 장손을 대신하여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이하 “취업지원제도”라 함).¹⁾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취업지원)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②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국선열의 유족

- 현행 취업지원제도는 장손의 자녀 중 성별 또는 나이에 상관없이 임의 지정이 가능하며, 국가보훈부장관의 심사결정을 거쳐 취업지원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채용시험 가점 부여, 의무고용, 특별 채용 등의 취업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한편,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은 대리취업지정권이 부여되는 “장손”을 독립유공자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나이순)로 하되,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간 협의에 의하여 지정된 손자녀가 있으면 이보다 우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²⁾

2. 애국지사 및 유족

3.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이 경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나.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애국지사의 가족

나.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다.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지원을 할 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2항·제3항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가구당 3명(취업지원 대상자 중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는 3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에게만 취업지원을 한다.

2)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부훈령 제51호) 제18조의2(독립유공자 등의 취업지원 특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의 자녀가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사망하여도 제출된 취업희망신청서에 한하여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특별채용대상자추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사망하여도 제출된 추천신청서에 한하여 특별채용대상자로 추천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장손

가. 장손인 손자녀는 독립유공자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간 협의에 의하여 손자녀 중 1명을 장손인 손자녀로 지정할 수 있다.

<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대상 및 지원 실적 현황 >

○ 취업지원 대상자 현황('24.6.30. 현재) :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자녀, 손자녀

구분	합계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독립유공자	89,966	5	182	9,757	80,022

○ 취업지원 실적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6월)
독립유공자	327	355	405	353	367	202

○ 손자녀의 자녀 취업지원 실적('24.6.30. 현재)

- 270명 지정, 150명 취업지원 실시(118명 취업 중, 32명 퇴직)

□ 그런데 현행 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 혜택을 대신할 수 있는 자녀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장손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나이가 적은 다른 손자녀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장손의 자녀 외 다른 자녀(증손자녀)가 취업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손자녀 간 협의가 성립하여야 하고, 일부 손자녀의 협의 누락 시에는 오직 장손만이 대리취업지정권을 가지므로 장손이 자신의 자녀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손자녀의 자녀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장손에게만 부여된 대리취업지정권의 대상을 모든 손자녀로 확대하고, 선순위 손자녀 1명 결정의 우선순위를 ①손자녀 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정한 손자녀 → ②손자녀 중 생활수준이 가장 낮은 손자녀 → ③손자녀 중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손자녀로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를 경우 독립유공자 손자녀 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고, 취업지원대상을 지정하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취업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대리취업지정권 부여 우선순위를 현행법상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순위³⁾와 유사하게 “손자녀 간 협의된 손자녀, 생활 수준이 가장 낮은 손자녀,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손자녀” 순으로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우선순위를 3순위까지 고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순위 손자녀를

3) 현행법령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순위는 ①손자녀 간 협의, ②생활 수준, ③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④나이가 많은 사람순임.

*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상금)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① 법 제1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인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상금 지급자를 지정한다. 다만,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 간에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12조 제4항 제1호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지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지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지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5.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급자
6.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손자녀 간의 협의에 의하여 손자녀 중 1명을 보상금 지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결정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순위와 같이 “손자녀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손자녀”를 4순위로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대리취업지정권 부여 순위 및 보상금 지급 순위 비교 >

구 분	현행법	개정안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 순위
1순위	장손인 손자녀 (다만, 손자녀 간 협의 시 장손 이외 손자녀 가능)	손자녀 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정한 손자녀	손자녀 간 협의
2순위		손자녀 중 생활수준이 가장 낮은 손자녀	생활수준
3순위		손자녀 중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손자녀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4순위			나이가 많은 사람

- 그 밖에, 개정안은 취업지원에 관하여 「국가유공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16조제4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이동하였으므로, 개정안에 따를 경우 “제16조제4항”을 인용하고 있는 제35조, 제39조의2, 제44조도 이에 맞춰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부는, 개정안은 훈령에서 해석·적용하고 있는 대리취업지정 제도를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고, 우선순위도 현행법상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순위와 같으므로 개정안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0

참고

대리취업 지정제도 개요

□ 도입취지

- 보훈대상자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의 자녀(독립·국가유공자 유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대리취업을 시킬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생활보장이 되도록 취업지원 특례를 마련

< 대리지정 취업 지정권자 및 지정대상자 >

구 분	독립유공자	6·25전몰군경	사망한 국가·5·18· 특수임무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정권자 (유가족)	장손	유자녀	부모	본인
지정대상자 (유가족 비대상)	장손의 자녀 1명	유자녀의 자녀 1명	형제·자매 1명	자녀 1명

□ 독립유공자 대리취업 지정권자(민법 개정 및 외부 지적 등에 따라 변화)

손자녀	⇒	호주상속 손자녀	⇒	호주승계 손자녀	⇒	장손	⇒	첫째자녀의 첫째자녀
'62년		'73년		'92년		'05년		'19년

- (**'62 특별원호법 제정**) 자녀가 없는 경우 '손자녀 1명'에 대해 취업지원하되, 그 손자녀가 취업이 불가능할 경우 그의 자녀 1명을 취업지원(단서 내용 이하 같음)
- (**'73 특별원호법 개정**) '호주상속자인 손자녀'로 변경
- (**'92 호주상속제도 변경**) '호주상속 손자녀'를 '호주승계 손자녀'로 변경
- (**'05 호주제 폐지**) '호주승계 손자녀'를 '장손인 손자녀'로 변경
- (**'19 인권위 권고**) 독립유공자 '장손' 지정취업 제도에 성별에 따른 차별요소가 있으므로 성 평등에 부합하는 방안 마련 권고

< 훈령으로 규정 >

- ◆ 장손을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로 해석·적용
- ◆ 손자녀간 협의에 의하여 '협의된 손자녀'를 장손으로 인정

□ 현행 제도

- (독립유공자법) 장손이 질병·장애·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의 자녀(증손자녀) 1명에 한하여 취업지원
 - * 장손에 대한 정의 규정 없음(훈령에서 첫째자녀의 첫째자녀로 해석·적용)
- '19년부터 독립유공자 손자녀 전원 협의 시 협의된 손자녀를 장손으로 보아 그의 자녀 1명에게 취업지원(훈령에서 규정)
- 독립유공자 손자녀는 **8만 22명** 등록
 - * 손자녀 평균연령 62.1세 / 손자녀 중 수권자 4,917명, 비수권자 75,105명
- 장손의 대리취업 지정은 **270명**, 그 중 취업자는 **118명**(43.7%)
- (국가유공자법 등 타 법령) 제대군인법에 의한 '장기복무제대군인'의 대리취업을 제외하고 폐지
 - 6·25전몰군경 유자녀의 자녀 및 사망한 유공자의 형제자매에 대한 취업지원 특례는 보훈체계 개편 시 폐지(법률 개정 이전 기 등록자는 지원)
 - * 국가유공자법('12.7.1.), 5·18유공자법('16.6.23.), 특임법('16.11.30.)
 - '12.7.1. 이후 '본인' 위주 취업지원 체계로 전환, 자녀 취업지원은 제한적으로 운영
 - '12.7.1. 이후 등록된 '비상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및 7급상이자의 자녀는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 대리 취업대상자 지정 및 취업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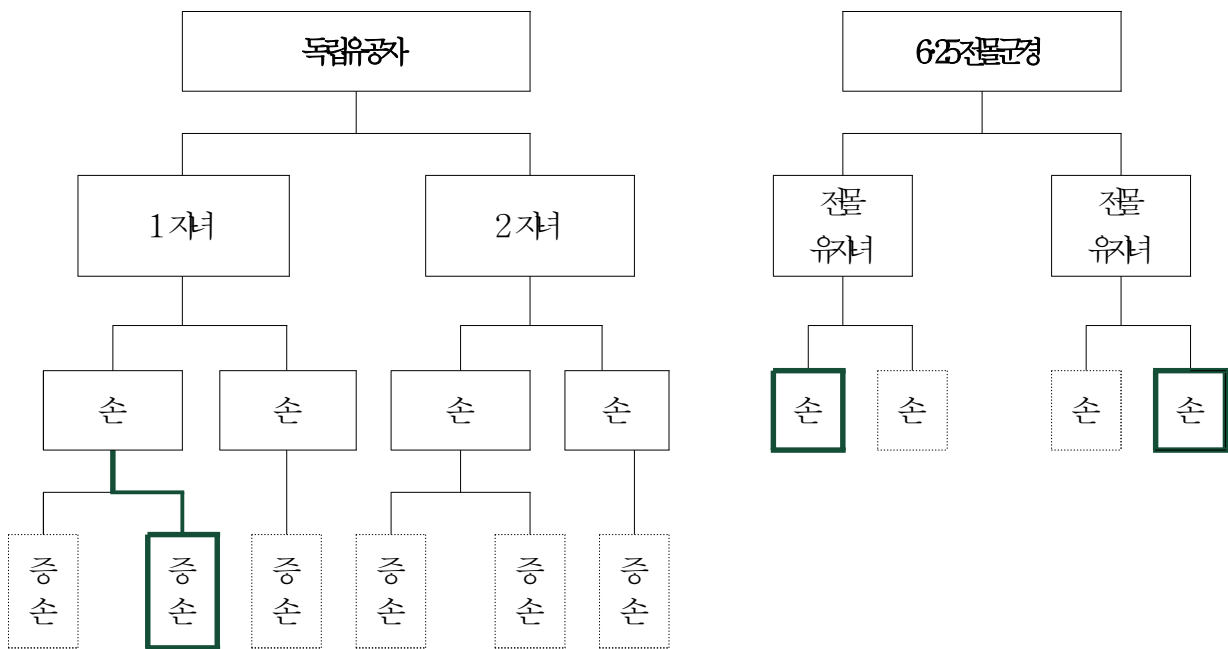
구분	합계	독립유공자 장손	6·25전몰군경 유자녀	사망한 유공자 부모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정	4,800명	270명	3,900명	618명	12명
취업	2,032명 (42.3%)	118명 (43.7%)	1,671명 (42.8%)	240명 (38.8%)	3명 (25.0%)

〈 대리취업 지정요건 및 지정대상 〉

【보훈대상별 대리취업 지정권자 및 지정대상】

구 분	독립 유공자	6·25전몰군경	배우자 · 자녀 없이 사망한 국가· 518 · 특수임무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정 권자	장손인 손자녀	6·25전몰군경 유자녀	부모	제대군인
지정 대상	장손의 자녀 1명 (존속)	모든 유자녀의 자녀 각 1명 (‘12년 폐지)	형제·자매 1명 (‘12년, ‘16년 폐지)	제대군인의 자녀 1명 (존속)

【보훈대상별 대리취업 지정대상 가계도(예시)】



※ : 유가족, 취업자원대상자 : 비유가족, 대리지정 취업대상자